

## 변경비교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(UH) [주식]

□ 정정 사유 : ① 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 발생일 : 2026. 2. 6.

□ 정정 내용

항 목	정정 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 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5. 12. 31. 기준</u>  <u>2025. 12. 29. 기준</u>
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5. 12. 29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6. 01. 05. 기준</u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6. 01. 05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12. 31. 기준</u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주요 투자대상국가 현황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: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[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] <u>2024.1 월 기준</u>	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: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[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] <u>2025.10 월 기준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	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(97.5% VaR 모형 사용) : <u>33.36%</u>	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(97.5% VaR 모형 사용) : <u>30.35%</u>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유형			
13. 보수 및 수수 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 준으로 기재 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5. 12. 31. 기준</u>  <u>2025. 12. 29.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<p>1) 투자신탁에 대한 과 세 :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 는 것이 원칙</p> <p>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 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 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 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 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 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 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 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다 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 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	<p>1) 투자신탁에 대한 과 세 :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 는 것이 원칙</p> <p>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 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 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 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 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 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 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 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 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p> <p><u>다만, 2025년 1월 1일 이 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 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 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) 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 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 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 수 합니다.</u></p>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		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 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 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 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	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 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 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 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
--	--	--	--
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간신	-	<u>2025. 12. 29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간신	-	<u>2025. 12. 29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간신	-	<u>2025. 12. 29. 기준</u>
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12. 31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제 26 기(2023.12.31) 제25기(2022.12.31)	<u>제 27 기(2024.12.31)</u> <u>제26기(2023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12. 31. 기준</u>